



제1695호

2022년 8월 1일

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3 6 8 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노 인 장 애 인 과 2
- 공 고 제 1 3 7 9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자 동 차 관 리 과 6
- 보 건 소 공 고 제 7 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8
- 보 건 소 공 고 제 7 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식 품 위 생 과 10
- 보 건 소 공 고 제 7 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식 품 위 생 과 12

고 시

- 고 시 제 7 5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13
- 고 시 제 7 6 호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방 재 하 수 과 16
- 고 시 제 7 7 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방 재 하 수 과 20
- 고 시 제 7 8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공 영 개 발 과 24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1368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시행 중인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정부 사업 대상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되어 존치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제정 2020.09.25. 조례 제172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73, FAX 453-58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표]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비교
-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시행 중인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정부 사업 대상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되어 존치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제정 2020.09.25. 조례 제1721호)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비교
-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37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20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인천서타84** 외 12건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자)

※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함.

3. 공고기간: 2022. 7. 20. ~ 2022. 8. 4. 까지

4. 공고내용

가. 납부장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나.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다. 이의신청: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

라.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익월까지 가산금3%, 그 후 증가산금 매월1.2%)됨
- 체납처분: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

5. 문 의 처: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5)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차량번호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내용	반송일	과태료
1	인천서타8444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번길 **, *층 **호(구월동, **프라자)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와 고지서	2022.07.06	30,000
2	53다5024	김*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간석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와 고지서	2022.07.06	30,000
3	13구2874	송*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도림동, 주****아파트)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와 고지서	2022.07.06	30,000
4	인천미추출파8935	이*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동 ***호(만수동, **빌라)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와 고지서	2022.07.06	30,000
5	34우6989	함*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구월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와 고지서	2022.07.06	30,000
6	부산부산진타4929	박*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호(구월동, 이**)	번호판가림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7.15	521,000
7	23부1272	박*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 ***-**, *층동(구월동)	번호판가림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7.15	521,000
8	인천미추출파8964	김*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7.15	31,260
9	356저3506	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 ***동 ***호(논현동, ****아파트)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7.15	31,260
10	인천미추출파6523	지*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호(구월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7.15	31,260
11	46어7258	박*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간석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7.14	31,260
12	인천부평아8743	김*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 ***호(간석동, 삼****)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7.15	31,260
13	인천남동파3680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 ***호(구월동, 구***** 더****)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7.15	31,260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2-7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8. 3.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7. 19. ~ 2022. 8. 2.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14-0199663	술바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6번길 12, 1층 118, 119호 (논현동, 부티크646)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10-19	2022-08-03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8. 2.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2. 7. 19.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2-7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2. 07. 14.
2022. 07. 19.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7. 20. ~ 2022. 8. 03. (15일간)
5. 직권말소 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영업신고 말 소 일
일 반 음식점	2020-0202361	치킨생각	김**	인천 남동구 석산로 175, 정문프라자 1층 107호(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2-28	2022-07-14
휴 게 음식점	2020-0202638	씨유간석대성점	조**	인천 남동구 구월로40번길 13, 1층 일부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6-30	2022-07-19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2. 7. 20.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2-7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2. 07. 20.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07. 20. ~ 2022. 08. 03. (15일간)
5. 직권말소 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영업신고 말 소 일
위탁급식 영업	2020- 0203002	해성실업 위탁급식소 (자매식당)	홍**	능허대로 729, 삼강산업개발(주) 공장 지하1층(고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6-30	2022-07-20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 7. 20.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7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95 (간석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7번길 6 (구월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95 (만수동)	2009.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022.7.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 195 기초구간에위치하여195를 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9-54, 111-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19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장도포대지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22.7.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도로 19 기초구간에위치하여19를 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21-1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장도포대지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22.7.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도로 21-1 기초구간에위치하여21-1 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7번길 6 (구월동)	2022.7.2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로 1-1 (간석동)	2022.7.2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202 (간석동)	2022.7.2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12 (간석동)	2022.7.2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11.>

남동구 고시 제2022-76호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은 남동구청 방재하수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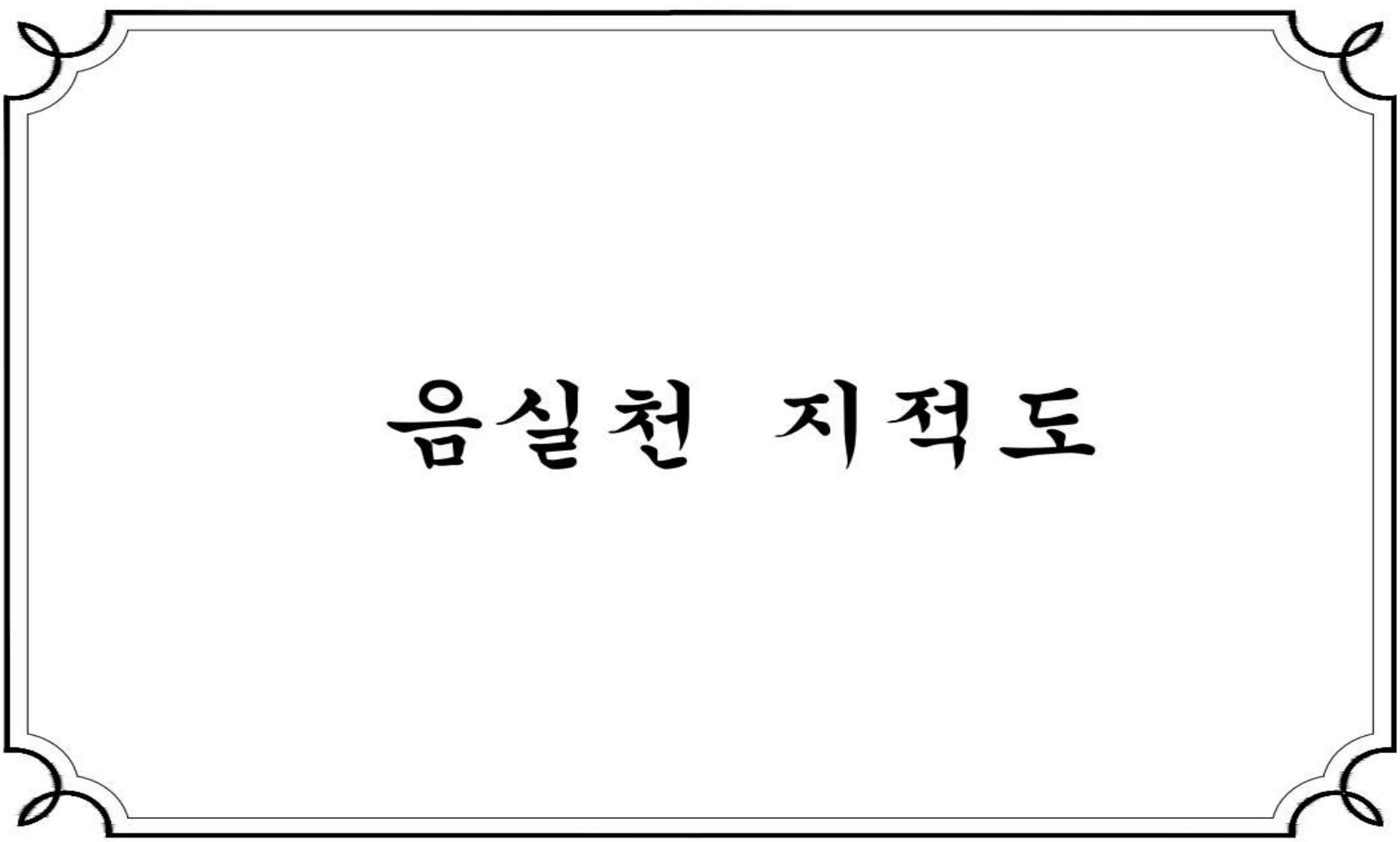
남 동 구 청 장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	결정 사유
신천	음실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43도 등 45필지	14,390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구역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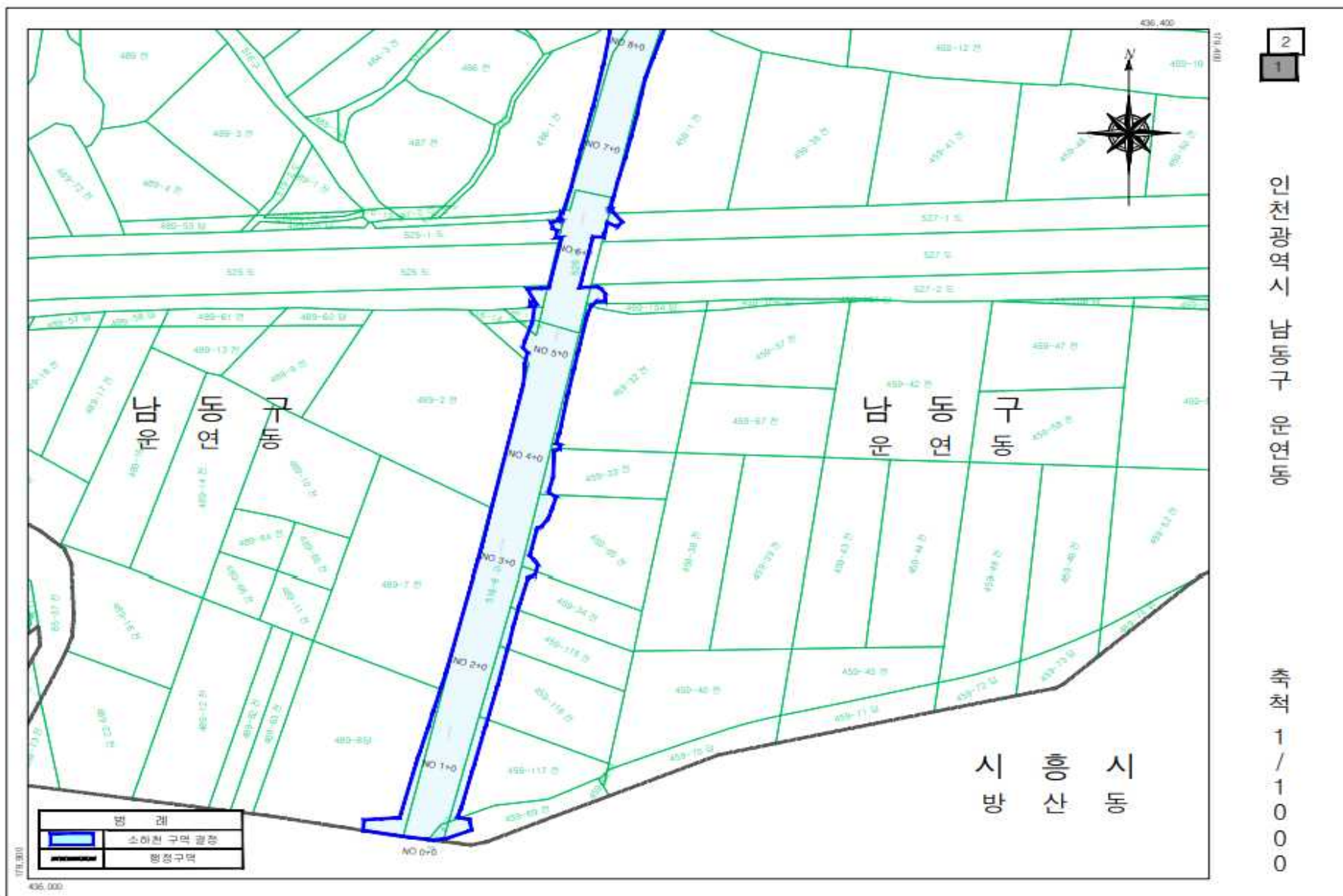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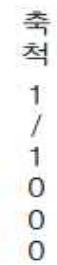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음실천 지적도





고 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개정 2020. 6. 11.>

남동구 고시 제2022-77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은 남동구청 방재하수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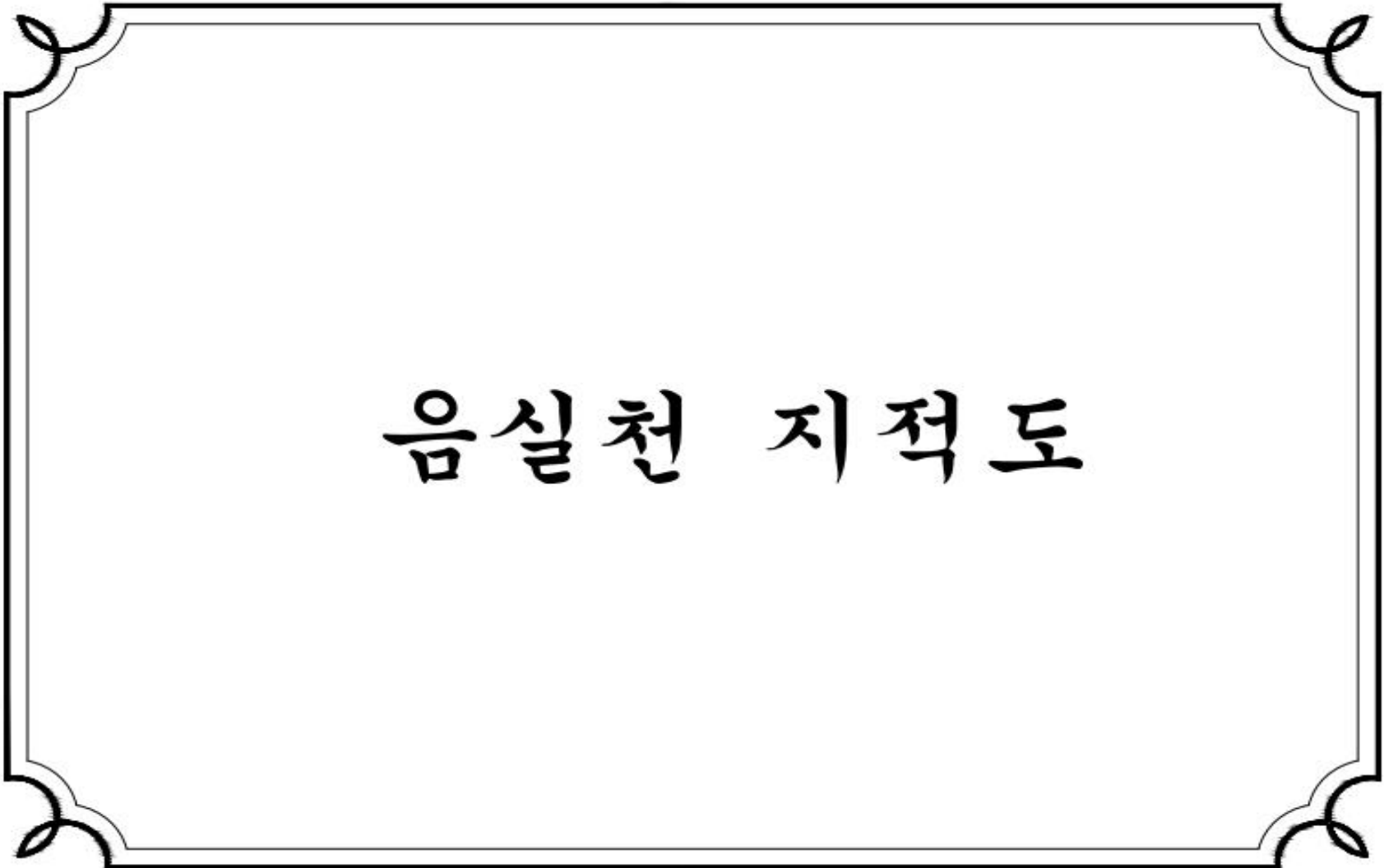
2022년 8월 1일

남 동 구 청 장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예정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지정(변경) 사유
신 천	음실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68대 등 46필지	9,277	소하천 구역 결정에 따른 예정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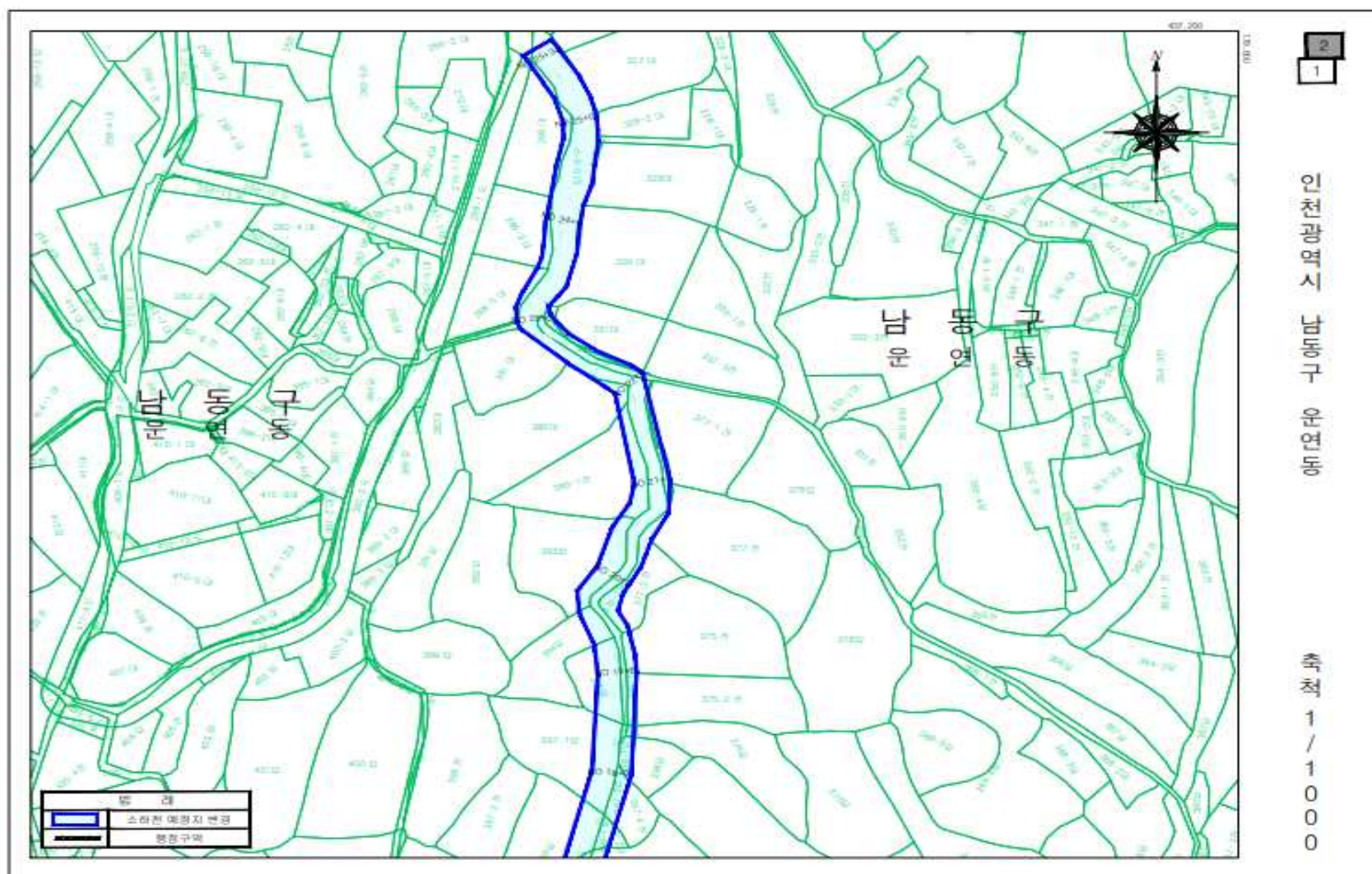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음실천 지적도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7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일

남 동 구 청 장

1. 신 청 인

가. 성 명 : 인천광역시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공사내용

가. 공 사 명 :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 남측부
공유수면 일원(논현동 1-19번지 일원)

다. 목 적 :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

라. 공사기간 : 2020. 12. 20. ~ 2022. 4. 15.

3. 점용·사용의 면적 및 실시계획 준공일

가. 점용·사용시설 면적 : 2,304.7m²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 18,881.1m² (직접 2,304.7m², 일시점용 16,576.4m²)

다. 실시계획준공일 : 2022. 7. 28.

4. 기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사항 문의는 남동구청
공영개발과(☎032-453-8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